

■ 최신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 주요 내용

종전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다 이직하였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 쉽다고 인정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 쉽다고 인정되면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하는 요건을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의 거리가 거주지로부터 50km 이상에서 25km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8. 8. 31. 시행\)](#)